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토론문

□ 들어가며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11년 11월 PLS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행정고시를 통해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한 PLS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PLS 시행을 예고하고 있음. 향후 PLS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MRL(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 0.01mg/kg 이하 기준을 적용하게 됨.
-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올바른 농약 사용을 통한 국산 농산물 소비자 신뢰제고 등 정부가 PLS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목적과 당위성에 대해서 농업계 또한 이견이 없음.
- 이에 한농연과 농협경제지주를 포함한 생산자단체, 작물보호제 관련 단체 들은 자발적으로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본부를 공동 발족하여 지난 3월 20일 발대식을 갖고 전국 각 지역에서 본격적인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음.
 - ▲적정 시비, ▲등록된 농약만 사용, ▲사용시기와 횟수 준수, ▲사후 관리 등 농약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발적 실천 의지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운동임.
 - 그동안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의 전국단위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과 교육 등을 병행해 오는 한편, PLS제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농촌 현장에서는 PLS제도 도입에 따른 상당한 혼선과 우려가 혼재한 상황임.

□ PLS제도 도입에 따른 농업인 우려사항

① 토양 잔류 및 타인에 의한 비의도적 농약 검출 우려

- 항공 및 드론 방제기술이 발달한만큼 바람에 의한 비의도적 농약 유입에

대해서는 더욱 우려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임. 매년 시행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및 밤나무 병해충 항공방제 등으로 방제지역 인근의 밭작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를 배제 할 수 없음.

- 또한 평야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농경지는 대부분 전·답이 혼재한 복합영농 지역이며 농지 면적 자체가 소규모임. 방제자(농업인)가 아무리 신경써서 방제작업을 하더라도 환경적·기술적 변수들로 인해 비의도적 농약 검출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마지막으로 한 농지에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예외일 수 없음. 예를들어 A품목에 대한 농약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토양에 흡수된 농약성분이 추후 재배될 B품목에서 발견될 경우를 배제 할 수 없으며, 이는 농업인 피해로 귀결됨.

②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MRL(잔류농약허용기준) 및 등록 농약 부족, 복잡한 농약등록절차로 인해 제도 시행 전 농약등록 마무리 한계 ⇨ 결국 부적합률 상승 요인으로 작용 우려

- 농진청의 2015년 잔류농약 안전성조사 결과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잔류농약 부적합률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면적 재배작물의 잔류허용기준 부적합률은 7.5%에서 23.3%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특히 소면적 재배작물의 제한된 여건상 미등록 농약 사용 비율이 93%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농촌진흥청은 금년도 내 84개 작물에 대해 1670개 농약을 등록시킬 예정이지만, 올해 84개 작물을 등록하더라도 여전히 130여개 작물은 등록 농약이 부족한 실정임. 현장에서는 정부 목표치 보다 훨씬 더 많은 농약을 등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약효·약해 시험과 잔류농약시험 등 농약 등록을 위한 절차상 진행속도가 더더 당초 정부 목표대로 마무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짐.
- 또한 기후변화,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열대작물, 약용작물, 이 외 새로운 작물 재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등록농약이 제한적이거나 없는 경우가 상당하여 생산 과정에 많은 애로가 있음.

③ 획일적 행정 조치 일관, PLS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부재에 따른 현장 혼란 가중

- 2016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고령인구(65세 이상)비율은 40.3%이며 농가 경영주 평균연령은 66.3세로 나타났음. 더욱이 지자체의 간헐적 교육으로는 정보 접근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지리적·환경적 한계를 지닌 농촌 내에서 당장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PLS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임.
- 더욱이, 제도 도입에 따라 가장 큰 혼란이 발생할 주체는 농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이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부와 농업계간 공론화 및 숙의 과정이 전혀 없었음.
- 또한 제도 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 주도로 추진되는 일회성, 제한적 홍보·교육으로는 제도의 부작용에 농업인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조성될 수 없기에 현장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④ 정부차원의 명확한 입장 및 대책 부족

- 모든 농산물에 대한 전면적 PLS제도 시행 논의가 거세게 일었던 작년부터 정부 및 학계, 국회 등에서 주최·주관하는 다수의 토론회와 공론의장이 있어왔고, 농업계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한 혹은 발생할 우려가 농후한 현안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지속 촉구해 왔음. 그러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현재까지도 정부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대책 발표가 전무한 상황임.
- 오늘 식약처의 발표자료에는 ▲제도 시행 이전 생산 농산물은 종전의 기준 적용, ▲비의도적 오염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토양 잔류 오염가능성 농약)등의 조치가 이행될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그러나 비의도적 오염은 토양 잔류 뿐만 아니라 이웃농가, 타인 등에 의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함.
- 아울러 다년생 농산물, 저장기간이 긴 농산물을 포함하여 지역별·재배유형별·품목별로 공통적·개별적 위험요인들이 상당히 존재하기에 정부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더욱 구체적인 대책들을 수립해 나가야 함에도, 현재까지 묵묵부답인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임.

- 결국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의 확실한 입장표명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해 관련 규정을 준수한 다수의 선의의 농업인이 되려 피해를 받을수도 있다는 것임.

□ 마치며

-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농업인들은 PLS제도 도입 목적과 취지에 대해 십분 공감하고 있음.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내용처럼 ▲환경적·비의도적 농약 검출에 따른 농업인 피해,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등록농약 및 MRL설정 부족, ▲부적합률 상승에 따른 농업인 피해 가중, ▲복잡한 농약등록 절차로 인한 제도 초기 심각한 혼란 초래 가능성, ▲PLS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부실, ▲정부차원의 명확한 입장 및 대책 부족 등의 이유로 동 제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작물보호제(농약)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과 소비자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임. 그러나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있어 필수 영농자재임을 부정할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 스스로가 등록농약만 살포, 정량 살포, 사용시기 및 횟수 준수 등을 주요 실천과제로 하는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것임.
-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PLS제도에 대한 현장농업인들의 우려사항과 고민들은 바로 동 제도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완벽하게 시행될 수 있을만큼 제도적으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을 인지해야 함.
- PLS제도 도입 이후에 발생하는 시행착오와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이를 점차 보완해나가면서 연착륙 시키려는 논리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농업인에게는 매우 위험한 논리라는 것을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옆 밭 이웃주민이 약 친대, 얼른 가서 우리 밭으로 못 넘어오게 경고하고 감시해! ○ 하늘에서 방제하면 바람때때 우리 밭으로 흘러올 수 있잖아? 주민들과 합의 해서 드론방제, 항공방제 못하게 하자! ○ 하라는대로 다하고 성실하게 이행했는데, 땅이 오염되었대, 우린 머먹고 살지? ○ 등록 농약도 없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인데 이제 무슨 농사 지어야 하나 ○ 정말이지 위험성 없다고 판단되면, 농약 등록기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 일도 바쁘고, 교통수단도 없는데 어떻게 읍내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와 ○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고품질 농산물을 대접하고 싶었는데, 내가 쓰지도 않은 농약 때문에 죄인이 되는구나 |
|---|

- 정책적으로 완비되지 못한 PLS제도 시행으로 안전사용 준칙을 성실히 이행한 선의의 농업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지역·농촌 공동체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음. 이는 결국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간극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꼭 상기하기 바람.

○ 한농연을 포함한 생산자 단체는 PLS제도의 보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PLS제도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자고 지속 요구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담당부처가 당장 2019년 1월부터 동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려 한다면, 이상에서 주장해 온 현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발표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함. 아울러, 이러한 부분들이 보완되지 못한 채 농업인의 피해 사례가 속출할 경우 그 책임은 오로지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일관한 정부 담당부처에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함.